

제156회(정례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1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4면
2.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7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14면
3.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 ...	17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21면
4.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	26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 연장 : 1년 ⇒ 2년
(안 제17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“종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3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중 “위원장의 유고시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당연직이 아닌 고문 및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,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-----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<u>종로구청장</u>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 ②~④ (생략)	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<u>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</u> ----- ②~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3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제17조의3(임기) ----- 2년-----
제1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(생략)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<u>위원장의 유고시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~④ (생략)	제1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원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----- ③~④ (현행과 같음)